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(경유)

제목 관원 질의 회신(직장어린이집 부속용도 관련)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5780호(2021. 3. 19)와 관련 문서입니다.

2. 질의요지

- A지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타 지역 B에 위치한 건축물에 사무실(지하1층)과 직장어린이집(지상1층~4층)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직장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“부속용도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- B지역 건축물의 직장어린이집은 주로 A지역 본사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(직장어린이집)로 운영 예정

3. 답변내용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“부속용도”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(가.~라. 생략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12호에서 “부속건축물”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“부속용도”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질의의 직장어린이집이 주된 용도인 본사가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본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시설사무관

하애은

행정사무관

이형주

건축정책과장

전결 2021. 4. 2.

김성호

협조자

시행 건축정책과-3349

(2021. 4. 2.)

접수 건축디자인과-6905

(2021. 4. 2.)

우 30103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

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838

팩스번호 044-201-5574

/ hanha1224@molit.go.kr

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